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1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 및 신청 방법(안 제3조)
- 예산 범위 내 지원 항목 규정(안 제4조)
- 운영시간 규정(안 제5조)
- 군수의 지도·감독, 운영 실태 및 성과 조사(안 제6조)
- 위치·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및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11. 11.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 2. 제안이유

-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 및 신청 방법(안 제3조)
- 예산 범위 내 지원 항목 규정(안 제4조)
- 운영시간 규정(안 제5조)

- 군수의 지도·감독, 운영 실태 및 성과 조사(안 제6조)
- 위치·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및 홍보(안 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약사법」 제21조의3에서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sup>1)</sup>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나. 입법의 취지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
- 안 제4조(재정 지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재정적 지원 항목을 규정함.
- 안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규정함.
- 안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조사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약사법

-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502
----------	-----

발의연월일: 2025년 11월 6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이은미, 심현정의원

## 1. 제안이유

관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절차 및 신청 방법(안 제3조)
- 다. 예산 범위 내 지원 항목 규정(안 제4조)
- 라. 운영시간 규정(안 제5조)
- 마. 군수의 지도·감독, 운영 실태 및 성과 조사(안 제6조)
- 바. 위치·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및 홍보(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10. 20. ~ 10. 28.(의회사무과-4512), 아래표참고

의회의원안	집행부의견(보건정책과)	검토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창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평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검토필요</p> <p>⇒ 사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관내 의료 서비스 환경으로는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내원하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의약분업의 예외사항을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함</li> <li>- 또한, 각 지역의 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전문의약품 조제를 위한 심야약국의 실효성 검토 필요함</li> <li>-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관내에는 현재 38개소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가 존재하여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일반의약품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음.</li> </ul>	<p>(부분수용)</p>
<p>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p> <p>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p>	<p>검토필요</p> <p>⇒ 사유 :</p> <p>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p> <p>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1-6개월간 “시범운영기간” 운영 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이용 인구수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인구수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평창군 지역현황에 맞게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p>	<p><b>1. 안 제3조관련</b></p> <p>「약사법」제21조의3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안한 시범운영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은 없음. 조례에 시범운영을 의무화할 경우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요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됨. 필요시 규칙 또는 내부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p>

<p>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운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법조항 추가 검토</p> <p>사유 : 이용실태 및 운영성과 등을 조사하여 이용자 수와 성과가 저조한 경우와 공공심야약국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p><b>2. 안 제6조관련</b> ‘법령위반시 예산지원 중단’ 규정 불수용 - 약사법 제21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임</p> <p><b>3.안제7조, 안제8조신설</b> 또한 안 제7조, 안 제8조의 신설의견은 약사법 제21조의3,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p>
<p>신설 제7조(지정 취소 등)</p>	<p>법조항 추가 제7조(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법 21조의3제5항과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지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p> <p>⇒ 사유 공공심야약국으로서 지켜야 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21조의3제5항과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신설 제8조(지원금의 환수)</p>	<p>법조항 추가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 사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제7조에 의거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착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p>	<p>조항 번호 이동 제9조(홍보 및 정보제공)</p>	

##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창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평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평창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2. 공공심야약국 시설·비품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

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운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 정보를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약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약사)"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12. "복약지도(복약지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4.18.]

## 약사법 시행규칙

###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본조신설 2024.7.12]

####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2]

####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2]

####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2. 공공심야약국 시설·비품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의원
연락처	(033) 330 -2504